# KOSHA GUIDE

C - 52 - 2016

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한다.

(3) 한번 설치된 안전통로는 작업종료시까지 유지시켜야 하며 옮길 경우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.

### 7.2 작업발판 설치기준

- (1) 작업시 작업발판은 빈틈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발판의 가장자리나 안전난간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광물을 부착시켜야 한다.

#### 7.3 기타 안전시설 기준

- (1) 작업장의 주 출입구, 장비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는 경 광등을 설치한다.
- (2) 안전시설에 부착된 전기시설은 근로자와 접촉되더라도 감전되지 않도록 절연, 접지 및 잠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3) 안전시설에 부착된 조명은 통행 근로자의 안면에 정면으로 투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비상통로에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
## 8. 야간작업 근로자 건강관리

#### 8.1 휴식시간

(1) 사업주는 작업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